

의안검토보고

의안 번호	제 11 호		
건 명	서울특별시서초구동행정구역조정을위한의견청취안		
제안(출)자	서초구청장	제안(출)년월일	2002. 8. 8.
검토위원명	전문위원 김재근		

1. 검토내용

가. 제안이유

서울지방법원내에 있는 기숙사건물은 법정동이 서초동과 반포동으로 분할되어 있어 2개세무서와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구분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능률화를 초래함으로 이의 해소 및 동경계의 명확화를 기하고자 반포동 지번을 법원건물의 대표지번으로 사용되는 서초동으로 편입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부지중 반포동지번을 서초동 지번으로 편입조정
- 대상지번 및 면적
 - 반포동 60-13(4,170.9m²) , 반포동 60-14(5,582.3m²) : 계 9,753.2m²
- 조정전후 비교

지번(路番)	면적 (m ²)		비고
	조정전	조정후	
서초동	6,401,197.6m ²	6,410,950.8m ²	면적 9,753.2m ² (증)
반포동	4,853,200.9m ²	4,843,447.7m ²	면적 9,753.2m ² (감)

2. 검토결과

□ 본의견 청취안은

서울지방법원 및 고등법원 등이 위치하고 있는 경내에 서초동과 반포동 지번이 함께 있어 행정업무의 비능률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법원경내 대부분의 면적 및 지번이 서초동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경내 일부 지분인 반포동 지번을 서초동 지번으로 편입 조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반포동 60-13(4,170.9m²), 반포동 60-14(5,582.3m²)를 각각 서초동 1701-13, 서초동 1701-14로 조정하려는 것임.

□ 검토의견

○ 대상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

- 동 지역은 서초동 1701-1외 5필지, 반포동 60-13외 1필지로서 서울고등법원, 서울지방법원 등이 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며, 건물 연면적은 124,309.91m²로서 20층 1동, 4층 3동, 2층 1동이 위치하고 있음.
- 특히 건물중 법원공무원교육원뒤 1개동은 서초동 지번과 반포동 60-13등 2개 지번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이 거주하는 일반 주거지역이 아닌 순수한 법원 경내 부지임.
- 동 부지면적은 852,358.4m²이며 이중 서초동 부지가 842,605.2m² (98.8%), 반포동 부지가 9,753.2m² (1.2%)임.

○ 조정에 따른 주민이해 및 장단점 비교

- 동 지역이 일반 주민들의 거주지와 무관한 법원 경내로서 지번을 조정 하더라도 주민들과 행정기관의 이해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 법원 경내 부지가 대부분 서초동 지번으로서 동 경내에 있는 반포동 지번을 서초동으로 지번을 변경 조정함으로써 관할세무서 및 해당 동사무소간의 행정구역을 분명히 할 수 있어 이로인한 행정의 능률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해당동장의 의견(서초3동, 반포4동) 검토

- 일반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법원 경내에 법정동을 달리한 지번이 있어 행정동 관할이 불분명하므로 행정업무의 비능률 해소를 위하여 행정구역 및 법정동 지번을 변경하여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관련법령 검토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자치구가 아닌 동의 구역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음.

○ 검토결과

위 내용을 종합검토한 바, 동 지역은 법원경내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 일반 주민들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으로서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위해 법원경내 반포동 지번을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서초동 지번으로 변경 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자료

관련위치도면 1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

[관련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③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구역변경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9. 8. 31〉

〈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서 첨부〉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견서 첨부) 자치구가 아닌구와 읍·면·동의 행정구역 조정의 승인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치도면

